제98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 지정(강화) ○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부수적으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(국가첨단전략기술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변경) – 신규 지정(총 2개) : 로봇분야 1개, 방산분야 1개 ▶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별표	1.비중요
2	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의 추가(신설) ○ 방류수산생물의 추가 ▶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	1.비중요
3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불건전한 인수행위 금지(강화) ○ (1)주관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(2)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별도 성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불건전 인수행위에 추가 ▶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9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매립지등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피해농업법인의 설립요건(강화) ㅇ 신규 설립하는 피해농업법인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한 경우로 규정 – (개정안)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* (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: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5호)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(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)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▶매립지등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2.임대차대상 자격기준(강화) ㅇ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법인 추가 – (개정안)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(기 임대차 참여법인은 ‘25.12.31일까지 등록) ▶매립지등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3.임대차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확대 및 위반행위 시정조치 강화(강화) ㅇ 임대차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확대: (현행) 1회 →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(개정안) 4회 ㅇ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제재기준 보완 (개정안) 부정한방법 계약 또는 전대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해지 ▶매립지등의 관리 · 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	
5	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피해농업법인의 설립요건(강화) ㅇ 신규 설립하는 피해농업법인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한 경우로 규정 – (개정안)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* (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: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5호)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(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)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▶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	1.비중요
6	연계정보의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 · 기술적 · 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(신설) ㅇ 연계정보 생성 · 처리의 안전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취해야할 물리적 · 기술적 · 관리적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할 안전조치의 내용을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구체화 ▶연계정보의 생성 ·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, 제11조, 별표3, 별표4	
7	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궤도시설 건설 설비기준 강화(강화) ○ 매다는와이어로프 이동주기(12년) 및 최소이동길이(3m 이상) 명시 ○ 속도계와 운행시간 기록계 추가 – (속도계 및 운행시간기록계 추가) 왕복식, 견인식, 화물식, 케이블철도 – (운행시간기록계 추가) 톱니바퀴식모노레일 ○ 설치해야하는 안전(보안)장치 추가(시설기준 마련) – 배터리 과충전·과전압·과열 보호장치 및 모니터링 장치 – 차량 내 추락방지장치, 차량간 충돌방지장치 – 순환방식 차량 역주행 감지장치 – 순환방식 고장차량 견인장치 ○ 1인 좌석, 입석 탑승면적 개선 – 궤도(삭도)시설 좌석 : 0.28제곱미터, 입석: 15인까지는 0.23 제곱미터, 15인초과 0.19제곱미터 ▶궤도운송법 제15조▶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7조, 제14조, 15조, 제30조, 제32조, 제55조, 제60조, 제73조제, 제6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 강화(강화) ㅇ 정기(정밀)안전검사 기준 중 시운전 제동거리 항목에 급제동 기준 마련 – 삭도시설 급제동기준 : 순환식은 제곱초당 1.25미터, 왕복식은 제곱초당 2.0미터를 초과하여 정지하지 않아야 함 – 궤도시설 급제동기준 :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철도는 제곱초당 2.0미터를 초과하여 정지하지 않아야 함 ㅇ 정기(정밀)안전검사 기준 중 궤도시설 선로 항목에 분기장치 검사항목 신설 – 분기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– 전선의 접속불량 및 손상이 없을 것 – 분기장치 작동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치가 작동할 것 ▶궤도운송법 제19조 ▶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	1.비중요
9	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위생용품제조업 등의 변경신고 기준 강화(강화) ㅇ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위생용품수입업자 등의 준수사항(신설) ㅇ 전통관 무균시험 등 검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별도의 창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수입 문신용 염료의 선통관 시 영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해당 문신용 제품을 유통·판매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.위생용품 수입 시 검사 요건 설정(문신용 염료, 구강관리용품)(신설) ㅇ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서류검사 대상에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을 추가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4.행정처분 기준 신설(신설) ㅇ 수입 문신용 염료의 선통관 시 영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해당 문신용 염료 제품을 유통·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	
10	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방사선 방어시설의 기준(강화) ㅇ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고,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그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에는 방어벽을 설치하되, 방어벽 바깥쪽에서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100mR이하, 차량의 바깥쪽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사용장소별 주당 2mR 이하이어야 함 – 다만, 무게가 10kg 이하이고 최대관전류량이 20mAs 이하인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 튜브로부터 반경 2m 에서의 누설선량이 주당 2mR 이하인 경우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검출기 뒤에는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함 ▶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	